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지정,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7.22. 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내용) 사업 대상 확대(유치원·대학·폐교),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및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지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등

첫째,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의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적극행정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둘째,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교복합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청과 지자체의 설치·운영·관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였다.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지자체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부담이 경감되어 학생과 주민 모두를 위한 학교복합시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문태 (044-203-7172)
		담당자	사무관	박성준 (044-203-6172)



붙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완료

1. 의결주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 등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68호, 2025.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의 기준과 지정 절차를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안 제4조의2 신설)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 면책을 받기 위한 기준을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의 업무 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면책대상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으로 정함.

나.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지정(안 제6조 신설)

1)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직속기관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 설치하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2)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사무실 및 장비·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의 지원(안 제7조 신설)

교육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6. 5. ~ 7.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5조제1항”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독기관의 장”을 “감독기관장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라 한다)”를 “(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학교복합시설 운영주체”를 각각 “운영관리자”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하 “면책대상자”라 한다)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등의 업무(이하 “대상업무”

라 한다) 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대상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면책대상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면책대상자가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면책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자문, 운영·관리”를 “연구·자문”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속기관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 설치할 것
2.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지정할 것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
-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원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보유할 것
 2. 지원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시설을 갖출 것
 3. 지원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조직 및 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제2항제2호의 사무실 및 장비·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 ④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

당 연도의 운영 계획 및 전년도 운영 실적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정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2.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별 운영 현황
3.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학교 및 학생의 이용 현황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적극행정 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증거자료
1.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등의 업무 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4. 그 밖의 사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 귀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이하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된다고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가 인정하는 행위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감독기관장등 -----
-----.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① -----

-----(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5. -----

----- 운영관리자 -----

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② 운영관리자-----

-----.

③ 운영관리자-----

-----.

1. ~ 4. (현행과 같음)
5. ----- 운영관리자-----

제4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하 “면책대상자”라 한다)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등의 업무(이하 “대상업무”라 한다) 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대상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면책대상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면책대상자가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청 소속 기관에 설치할 것

2.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지정할 것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
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
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원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보유
할 것

2. 지원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시설
을 갖추 것

3. 지원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을 갖추 것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조직 및 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제2항제2호의 사무실 및 장비·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④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 계획 및 전년도 운영 실적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신 설>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정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경비를 지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2.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별 운영 현황

3.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학교
및 학생의 이용 현황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
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6172